〈 창업희망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사항 〉

1. 본 서류는 '대외 공개용 정보공개서'로서, 정보공개서 원본에서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는 내용을 모두 비공개 처리 하여, 대외 공개하기에 적합하도록 바꾼 것입니다.

원본을 확인하려는 경우 해당 가맹본부에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2. <u>가맹계약을 체결</u>하시려는 경우, 반드시 가맹본부에게서 <u>본 서류가</u> <u>아닌 정보공개서 원본을</u> 받아 보고, <u>14일의 숙고기간 동안 그 내용을</u> 검토해 보신 후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 원본을 제공하지 않거나, 14일의 숙고기간이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계약을 체결하거나 가맹금을 수령하는 경우, 이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에 해당됩니다.

3. 본 서류의 내용은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를 변경 등록하거나, 비공개 대상 항목이 변경되는 등의 경우 수시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서울특별시장



정보공개서 등록번호 : 20120100404

정보공개서 최초 등록일 : 2012.08.10

정보공개서 최종 등록일: 2023.06.13.

happy@happycare.co.kr

해피헬퍼 정보공개서

(주)해피케어는「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1항에 따라 귀하에게 이 정보공개서를 드립니다.

20 . . .

(주)해피케어

<주 의 사 항>

이 정보공개서는 귀하께서 체결하려는 가맹계약 및 해당 가맹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정보를 담고 있으므로 그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한 후에 계약체결 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맹희망자에게는 정보공개서의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고 판단할 수 있도록 일정한 기간이 주어집니다. 따라서 이 정보공개서를 제공받은 날부터 14일(변호사나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은 경우에는 7일)이 지날 때까지는 가맹본부가 귀하로부터 가맹금을 받거나 귀하와 가맹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이 정보공개서는 법령이 정한 기재사항을 담고 있는 것에 불과하며 그 **내용의 사실 여부를 공정** 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에서 모두 확인한 것은 아닙니다. 또한, 귀하께서는 어디까지나 가맹계약서의 내용에 따라 가맹사업을 운영하게 되므로 정보공개서의 내용에만 의존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귀하께서 **가맹계약서에 서명하는 순간**부터 그 내용에 구속됩니다. 따라서 충분한 시간을 갖고 정보공개서나 가맹계약서의 내용을 검토하시고 **기존 가맹점사업자를 방문하여 얻은 정보**에 근거하여 가맹본부의 신뢰성을 판단하도록 하십시오.

가맹사업은 법률, 회계, 경영 등 다양한 분야의 지식이 필요한 분야이므로 가맹거래사 등 전문가의 자문을 받는 것을 권장합니다. 귀하가 과거 사업경력이 없는 경우 관련 업종에서 경험을 쌓아 경영 수행 능력을 갖출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업 초기에 많은 자금이 소요되므로 **귀하의 재정상태를 확실히 점검**한 다음 창업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주소 : 서울시 광진구 천호대로 596 (능동)

전화: 02-2237-3579 팩스: 02-2237-3360

가맹사업 담당부서 및 전화번호: 02-2237-3579

목 차

- I. 가맹본부의 일반 현황
- П. 가맹본부의 가맹사업 현황
- 皿. 가맹본부와 그 임원의 법 위반 사실
- IV. 가맹점사업자의 부담
- V. 영업활동에 대한 조건 및 제한
- VI. 가맹사업의 영업 개시에 관한 상세한 절차와 소요기간
- VII. 가맹본부의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
- WⅢ. 교육·훈련에 대한 설명
- IX. 가맹본부의 직영점 현황

- < 정보공개서를 읽기 전에 > -

- ◇ 정보공개서는 가맹본부의 자료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이므로 귀하가 실제 운영할 사업 내용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전에 충분히 내용의 타당성을 검토하 고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경우에 가맹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 정보공개서의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법률 지식이 필요합니다.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은 가맹본부 측에 충분한 설명을 요구하고 필요한 경우 가맹거래사나 변호사 등 전문가에게 자문을 요청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 가맹본부로부터 제공받은 정보공개서와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에 등록한 정보 공개서(http://franchise.ftc.go.kr)를 비교하여 다른 내용이 있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에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 ◇ 정보공개서 기재사항에 허위·과장된 정보가 포함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공정거래** 위원회 또는 가맹사업거래홈페이지(http://franchise.ftc.go.kr)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보공개서와 함께 귀하가 창업하려고 하는 점포 예정지 인근 10곳의 정보(가맹점명, 소재지, 전화번호)를 제공받아야 합니다. 인근 점포를 직접 방문하셔서 가맹본부를 신뢰할 수 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가맹본부와 상담하기 전 '창업희망자가 알아야 할 10가지 필수사항'과 '창업희망자를 위한 가맹사업 계약체결 안내서'를 확인하시고 가맹사업법 관련 조항도 찾아보십시오. 가맹사업거래홈페이지(http://franchise.ftc.go.kr) - '알림마당' - '공지사항'
- ◇ 가맹본부와 분쟁이 발생한 경우 정보공개서는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습니다. 정 보공개서를 계약서와 함께 잘 보관하십시오.
- ◇ 참고로,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 변경등록을 신청하여 공정위 등에서 심사 중인 경우에는 실제 내용과 본 정보공개서가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 정보공개서를 제공받으시면 가맹본부에게 변경등록 신청여부 및 변경되는 내용에 대해 반드시 확인받으시고, 필요한 경우 추후 변경등록이 완료된 정보공개서의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I. 가맹본부의 일반 현황

1. 가맹본부의 일반 정보

ㅇ 당사의 일반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상호	영업표지		주 소					
	해피헬퍼 외	서울시 광진구 천호대로 596(능동)					6(능동)	
(주)해피케어	법인 설립등기일	사업지	卡릉록일	C	ᅢ표자	대표전화번	호	대표팩스번호
(十)에피기이	2011.12.30	2012	.01.18	주동환		환 02-2237-3579		02-2237-3360
	법인등록번호	1101	11-47641	75	사업지	ト등록번호	2	04-86-31981

2. 특수관계인의 일반 정보

o 당사의 특수관계인 중 최근 3년 동안 가맹사업 경영 경험이 있는 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관계	이름/상호	영업표지	주 소			
_	ステも		서울시 광진구 천호대로 596(능동)			
대표이사	대표이사 (주)해피케어	해피헬퍼 외 1	대표자	대표전화번호	대표팩스번호	
			주동환	02-2237-3579	02-2237-3360	
관계	이름/상호	영업표지		주 소		
шот	이저어	이권어		니 광진구 천호대로	- 596(능동)	
배우자 (사내이사)	이정연 (주)해피케어	해피헬퍼 외 1	대표자	대표전화번호	대표팩스번호	
(사내이사)			주동환	02-2237-3579	02-2237-3360	

3. 가맹본부의 인수 • 합병 내역

o 당사는 바로 전 3년 동안 다른 기업(가맹사업 영업표지를 포함하여 가맹사업을 경영한 기업)을 인수·합병(다른 기업의 가맹 관련 사업을 양수 또는 양도한 경우도 포함한다)하거나 다른 기업에 인수·합병된 적이 없습니다.

4. 가맹희망자가 앞으로 경영할 가맹사업(앞으로 '해피헬퍼' 라 합니다)의 내용

ㅇ 귀하는 앞으로 아래 표에 따른 가맹사업을 경영하게 됩니다.

구 분	내 용	추가 설명
명 칭	해피헬퍼	베이비시터
상 호	해피헬퍼 OO점	
상표(서비스표)	해 피 케 어 happycare	등록번호 : 4101367760000
그 밖의 영업표지	Happy Helper	

5. 바로 전 3개 사업연도의 재무상태표 및 손익계산서

1) 당사의 바로 전 3년 동안의 재무상황 요약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미포함)

연도	자산총계	부채총계	자본총계	매출액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2021	64,353	178,306	-113,952	358,813	50,479	77,349
2022	62,085	134,575	-72,490	338,248	2,555	41,462
2023	59,766	171,825	-112,059	303,935	-49,857	-36,673

- ㅇ 그 근거자료는 별첨 1과 같습니다.
- 2) 당사의 바로 전 3년 동안의 가맹사업 관련 매출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ㅇ 당사의 가맹사업 관련 매출액은 재무상황과 동일합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미포함)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장

ㅇ 당사는 해피헬퍼 외 다른 사업 1개(해피케어)를 하고 있으며, 영업표지별 매출액을 배분하는데 어려움이 있어 전체 매출액을 기재하였습니다. 매출의 대부분은 해피케어(산후도우미)에서 창출됩니다.

6. 가맹본부의 임원 명단 및 사업경력

ㅇ 당사의 임원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관련여부	이름	현 직위		사업경력	
원인어구	판단여구 이름 연식		기간	직위	담당 업무
가맹사업	주동환	대표이사	2011.12.30~현재	(주)해피케어 대표이사	업무총괄
관련임원	이정연	사내이사	2011.12.30~현재	(주)해피케어 사내이사	교육총괄

7. 바로 전 사업연도 말 임직원 수

ㅇ 당사의 바로 전 사업연도 말 임직원 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시점	임원:	수(명)	피인스/명〉
시점	상근	비상근	직원수(명)
2023년 12월 31일	1	1	4

8. 가맹본부 및 가맹본부의 특수관계인의 가맹사업 경영 사실

o 당사 및 당사의 특수관계인은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년 동안 다음과 같이 가맹사업을 경영하였거나 경영하고 있습니다.

관계	상호/이름	구분	기간	사업내용
가맹본부	(주)해피케어	유사업종의 가맹사업 경영	2004.08~현재	해피케어(등록번호:20120100405)라는 영업표지의 가맹사업경영
특수관계인 (배우자)	이정연	유사업종의 가맹사업 경영	2004.08~현재	해피케어(등록번호:20120100405)라는 영업표지의 가맹사업경영

9. 사용을 허용하는 지식재산권

ㅇ 당사가 귀하에게 사용을 허용하는 지식재산권은 다음과 같습니다.

명칭	권리내용	등록 및 등록신청 여부(일자)	출원번호 및 등록번호	소유자 (등록신청자)	존속기간 만료일 (가맹본부의 사용기간)
해피케어 happycare	해당상표를 사용할 수 있는 권한	2005.05.30 출원 2006.08.29 등록	출원 4120050012502 등록 4101367760000	㈜해피케어	2026.08.29. (2026.08.29.)

- o 귀하가 허용된 범위를 벗어나 당사의 상표(특허)를 사용할 경우에는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으니 주의하여야 합니다.
- o 당사의 지식재산권 내용은 한국특허정보원 특허정보검색서비스(http://www.kipris.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II. 가맹본부의 해피헬퍼 가맹사업 현황

1. 해피헬퍼를 시작한 날 : 2012년 8월 25일

2. 해피헬퍼 연혁

가맹본부 상호	영업표지	대표자	가맹사업 경영 기간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주)해피케어	해피헬퍼	주동환	2012.08.25~2020.04.19	서울시 동대문구 천호대로11-3(신설동) 남선빌딩 4층
(주)해피케어	해피헬퍼	주동환	2020.04.20 ~ 현재	서울시 광진구 천호대로 596(능동) 삼진빌딩 2층

3. 해피헬퍼 업종

영업표지	업종					
해피헬퍼	대분류	소분류(주요상품)				
애피필피	기타서비스	베이비시터, 가사도우미				

4. 바로 전 3년간 사업연도 말 영업 중인 해피헬퍼 가맹점 및 직영점의 총 수

(단위: 개)

TICH	2021.12.31				2022.12.31			2023.12.31	
지역	전체	가맹점수	직영점수	전체	가맹점수	직영점수	전체	가맹점수	직영점수
전체	5	4	1	5	4	1	5	4	1
서울	1	-	1	1	-	1	1	-	1
부산									
대구									
인천	1	1	-	1	1	-	1	1	-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3	3	-	3	3	-	3	3	-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5. 바로 전 3년간 해피헬퍼 가맹점 수

(단위: 개)

연도	연초	신규 개점	계약 종료	계약 해지	명의 변경	연말
2021	4	-	-	-	-	4
2022	4	-	-	-	-	4
2023	4	-	-	-	-	4

6. 해피헬퍼 외에 가맹본부가 경영하거나 특수관계인이 경영하는 가맹사업 현황

o 당사의 해피헬퍼 외에도 가맹본부 및 가맹본부의 특수관계인이 경영하고 있는 가맹사업의 최근 3년간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개)

구분	상호/이름	영업표지	정보공개서	업종	가명	뱅점/직영점의	수
丁世	영오/이금	SH포시	등록번호	<u> </u>	2021.12.31	2022.12.31	2023.12.31
가맹본부	(주)해피케어	해피케어	20120100405	서비스	42/0	37/0	37/0

7. 바로 전 사업연도 가맹점사업자의 연간 평균 매출액(직영점 매출은 제외)과 그 산정기준

o 해피헬퍼 가맹점사업자 한 명이 2023년에 올린 연간 평균 매출액 및 지역별 매출액은 아래와 같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보다 정확한 금액은 매출액 표의 상한과 하한 금액 사이에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미포함)

			2023년 기	ㅏ맹점사업 지	·의 연간 평	균 매출액		
지역	2023년 말 가맹점 수	연간 평균 매출액			평균 (상한)	연간 평균 매출액(하한)		비고
	1001	연간 평균 매출액	면적 3.3㎡당	상한	면적 3.3㎡당	하한	면적 3.3㎡당	
전체	4	300	13	300	13	300	13	4개점 대상 * 1개점 외 실적 없음
서울								
부산								
대구								
인천	1	해당없음						5곳 미만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3	해당없음						5곳 미만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 o 당사의 가맹점사업자 연간 평균 매출액은 가맹점별 POS(Point of Sales)상의 매출액을 근거로 하여 기재한 것입니다. 현재 '해피헬퍼'는 해피케어(산후도우미 서비스) 가맹사업을 영위하면서 '부가적인' 서비스로 일부 가맹점사업자가 진행하고 있습니다. 즉, 해피헬퍼 가맹점사업자의 '주력 서비스'가 아닙니다. 또한 가맹본사가 '임시'로 권한을 부여하여 가맹점사업자는 '가맹비 없이' 해피헬퍼를 부가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해피헬퍼 홍보 등 사업활성화를 위한 영업활동이 없기에 나타나는 현상일 뿐입니다. 가맹본사는 향후 전략적으로 해피헬퍼의 본격적인 사업활성화 시기를 검토하고 있으며, 이때 가맹점사업자는 가맹금 납입(가맹비, 교육비) 등 필요한 요건을 충족해야 관련 권한을 정식으로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 o 당사 가맹점사업자의 업무는 대부분 유선상으로 진행되고 사무실은 관리사 교육 등의 용도로 사용되므로 '면적3.3m'당 매출액'의 경우, 사무실 면적과 매출액은 큰 상관관계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 o 매출액은 가맹점사업자별로 물품 공급액, 시장상황, 점주의 노력 등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달라질수 있습니다. 따라서 위 표에 나타난 매출액이 귀하가 올릴 수 있는 미래 수입과 같지 않다는 점을 명심하여야 합니다.
- o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9조 제3항·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제1항에 따라 당사가 매출액 추정에 사용한 자료는 당사의 본사 사무실에 비치하고 있습니다. 귀하가 당사로 방문하여소정의 신청서를 작성하시면 열람이 가능합니다.

8. 가맹점의 평균 영업기간

ㅇ 바로 전 사업년도 말 현재 영업중인 가맹점사업자의 평균 영업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연도	영업중인 가맹점 수	평균 영업기간
2023	4	4,145일 (11년 3월)

9. 가맹지역본부(지사, 지역총판)의 일반 정보

ㅇ 당사는 가맹점 관리를 위하여 지역사무소, 지역총판 등을 운영하지 않아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10. 광고ㆍ판촉 지출 내역

ㅇ 당사에서 2023년에 가맹본부 전체 가맹사업(해피헬퍼 외 1개)과 관련하여 광고비로 사용한 금액은 다음과 같으며 해피헬퍼와 관련하여 사용한 광고 및 판촉비는 이보다 더 적을 수 있습니다. 광고비 및 판촉비를 가맹점사업자와 분담하는 기준은 26쪽을 참고하십시오.

구분	수단	기간	지출 비용 (단위: 천원, 부가세 미포함)			비고
			합계	가맹본부	가맹점	
합계			15,525	15,525	-	
광고	비공개	비공개	15,525	15,525	-	

11. 가맹금 예치

o 귀하가 당사와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가맹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국민은행에 예치하여야 하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예치기관 상호	담당 지점 또는 부서	주소	전화번호
국민은행	보문동지점	서울특별시 성북구 보문동7가 112-2	02-927-9010

- o 귀하는 가맹금을 당사의 소정서식을 작성하여 국민은행에 계약 체결 다음 날까지 예치신청 하여야합니다. 예치방법은 국민은행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공인인증서를 다운받아 설치한 후 "예치 서비스"를 클릭한 다음 해피헬퍼를 찾아 금액을 입력하면 됩니다.
- o 귀하는 또한 국민은행에서 발급한 예치증서를 보관하고 있어야 하며 아래 주의사항을 반드시 알아 두어야 합니다.

가맹금 예치와 관련하여 가맹점사업자가 알아두어야 할 사항

- 1. 가맹점사업자가 영업을 시작하거나 가맹계약 체결일부터 2개월이 지난 경우에는 이 가맹예치금은 가맹본부에 지급됩니다.
- 2.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가맹금의 지급이 보류됩니다.
- 가. 가맹점사업자가 예치가맹금을 반환받기 위하여 소를 제기한 경우
- 나. 가맹점사업자가 예치가맹금을 반환받기 위하여 알선, 조정, 중재 등을 신청한 경우
- 다. 가맹점사업자가 가맹금반환 사유가 발생하여 가맹본부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한 경우
- 3. 2번의 가~다의 조치를 취한 경우 그 사실을 예치기관에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예치가맹금은 가맹본부에 지급될 수 있습니다.

12.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 등의 체결 내역

ㅇ 당사는 가맹점사업자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주)서울보증보험과 피해보상보험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항목	내용	비고
보험인(보험회사)	(주)서울보증보험	
보험계약자	(주)해피케어	가맹본부
피보험인(보험금을 지급받는 자)	가맹점사업자	
보험기간	가맹금 예치기간(가맹계약체결일로부터 2개월이 경과한 날 또는 가맹점사업자 영업 개시일까지)	
보험금액	예치금액	
보장범위	가맹점사업자의 피해액 일부 보장 (가맹점사업자의 가맹비, 교육비 보장)	
지급조건	가맹본부의 가맹금반환의무 불이행	
보험금의 수령절차	가맹점사업자의 보험금 신청 → 가맹본부 경유 → 보험회사 접수 → 보험회사 조사 → 지급 여부 결정 → 보험금 지급	평균 2개월 소요

皿. 가맹본부와 그 임원의 법 위반 사실

1.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조치

ㅇ 당사와 당사의 임원은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년 동안 가맹사업거래와 관련하여 가맹사업거래의 공 정화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및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 위원회 또는 시도지사로부터 **시정조치 등을 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2. 민사소송 및 민사상 화해

o 당사와 당사의 임원은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년 동안 가맹사업거래와 관련하여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거나, 사기・횡령・배임 등 타인의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영득 또는 이득하는 죄로 받은 유죄의 확정판결과 관련된 민사소송에서 패소의 확정판결을 받았거나, 민사상 화해를 한 사실이 없습니다.

3. 형(刑)의 선고

o 당사와 당사의 임원은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년 동안 사기·횡령·배임 등 타인의 재물이나 재산 상 이익을 영득 또는 이득하는 죄를 범하여 **형의 선고를 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Ⅳ. 가맹점사업자의 부담

1. 영업개시 이전의 부담

o 귀하가 해피헬퍼 가맹사업을 시작하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금액이 소요됩니다. 이 금액에는 귀하가 지불하여야 하는 점포의 임대비용 등이 제외되어 있습니다. 또한, 귀하가 운영하게 될 점포의 위치 및 규모, 내부 설비의 종류, 영업 시작까지 걸리는 시간 등이 상이하므로 실제 지불하는 금액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ㅇ 귀하가 부담하여야 할 대가는 매우 다양하나 크게 다음의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구분	지급 대상	예치 대상 여부	비고
최초 가맹금	가맹본부	예치	확정 금액
기타 비용	가맹본부 또는 다른 업체	예치하지 않음	추정 금액

1) 최초 가맹금을 자세히 나누면 다음 표의 내용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포함)

구분	금액	지급 기한	반환조건	반환될 수 없는 사유	비고
총계	16,500				
가맹비	11,000	계약 체결후 1일 이내	당사가 가맹사업법에 의하여 가맹금반환의무가 있는 경우 일부 또는 전부 반환	계약금 성격의 금전	
교육비	5,500	계약 체결후 1일 이내	교육시작 1일 이전에 계약 해지	교육시작 후	

2) 예치가맹금의 범위와 그 금액

o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귀하가 예치하여야 하는 가맹금의 자세한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한편, 귀하가 당사에 지급하는 가맹금은 한 번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구분	금액(단위: 천원, 부가세 포함)
합계	16,500
가맹비	11,000
교육비	5,500

3) 귀하가 그 밖에 지급하여야 하는 비용을 자세히 나누면 다음 표의 내용과 같습니다. 귀하가 가맹점을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물품의 품목은 17쪽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포함)

구분	지급대상	금액	면적 3.3m ² 당 금액	지급기한	반환조건	비고
총계		2,431	-			33m² 기준
사무집기		1,650	-			책상,컴퓨터,프린 터,팩스,전화 등
현판	가맹점사업자가 선정한 업체	66	-	계약 업체에	계약 업체에	
온라인광고 (파워링크, 지도 등)		550	-	따름	따름	포털업체 등
전단지	지정업체	165	-			디자인/인쇄업체

- o 위 표의 금액은 당사가 그 동안의 가맹점 운영 경험을 토대로 추정한 것으로 실제 지불 금액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 4) 가맹점 입지 선정 주체 및 선정 기준
 - ㅇ 당사는 신규 가맹점 입지를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선정 주체	선정 기준				
가맹희망자	가맹희망자가 원하는 지역 파악 → 지역지정→ 가맹희망자 직접 조사 또는 가맹희망자				
시원의당시	가 전문 업체에 의뢰 → 당사 및 가맹희망자가 동의 시 확정				

- 5) 가맹점사업자와 그 종업원의 교육 및 계약ㆍ채용 기준
- o 당사와 계약을 체결하여 교육을 받거나 귀하가 운영하는 가맹점에 종업원을 채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교육 기준	계약・채용 기준
가맹점사업자	특별한 기준 없음	만20세 이상일 것
종업원	특별한 기준 없음	만18세 이상일 것

- 6) 가맹점 운영에 필요한 설비 등의 내역 및 공급방법ㆍ공급업체
- o 해피헬퍼 가맹점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물품이 필요합니다. 13쪽 표 및 17쪽의 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장
- o 전단지의 경우 해당 인쇄소에서 '디자인 제작' 및 '인쇄 출력'을 진행하며 디자인 소유권이 해당 업체에 있으므로 타 인쇄소에서 출력할 수 없습니다. 타 인쇄소를 활용하실 경우 새로운 디자인 기획 및디자인 비용을 해당 인쇄소에 별도로 지불하셔야 합니다.
 - 7) 한편, 귀하가 당사에 지급하는 가맹금은 한 번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2. 영업 중의 부담

1) 비용 부담

o 귀하가 영업을 시작한 후에도 다음과 같은 비용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특히 광고분담금에 대한 세 부 분담기준은 26쪽에 나와 있습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포함)

구분	지급대상	금액	지급기한	반환조건	반환될 수 없는 사유	비고
로열티	가맹본부	330	다음 월 20일	-	사용된 비용	
광고분담금	가맹본부	실비	광고 실시 전	광고시행 이전	광고 시행 이후	가맹본부와 협의하여 광고비 규모 결정
교육훈련비	가맹본부	실비	별도 공지	교육 전	교육 후	교육 필요시

2) 구입요구 품목 구입을 통한 가맹금 지급

o 가맹점사업자가 필수품목(강제, 권장)의 거래를 통해 당사에 지급하는 대가 중 적정한 도매가격을 넘는 대가(이하 "차액가맹금"이라 한다)의 2023년도 평균 규모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장

* 현재 '해피헬퍼'는 해피케어(산후도우미 서비스) 가맹사업을 영위하면서 '부가적인' 서비스로 일부 가맹점사업자가 진행하는 정도로 즉, 해피헬퍼 가맹점사업자의 '주력 서비스'가 아닙니다. 가맹본사가 '임시'로 권한을 부여하여 가맹점사업자는 '가맹비 없이' 해피헬퍼를 부가적으로 운영 중이므로, 해피헬퍼홍보 등 사업활성화를 위한 영업활동이 없기에 나타나는 현상일 뿐입니다.

가맹점당 평균 차액가맹금 지급금액은 추정금액으로 2023년도에 당사가 가맹점사업자에게 공급한 구입요구품목의 매출액에서 해당 품목의 구매금액 합을 뺀 차액을 6개월 이상 운영한 가맹점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이 경우 전년도에 구입하여 금년에 공급하는 부분, 금년에 구입하였으나 아직 공급하지 않은 부분, 자체생산품목에 대한 차액가맹금 미포함 등으로 인한 오차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3) 가맹점사업자에 대한 감독

ο 당사는 귀하의 영업 상황에 대하여 일정한 감독을 실시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재고관리 및 회계처리 등을 점검하고 가맹본부가 정한 규정 이외의 서비스 취급 여부, 서비스 상태, 운영 전반에 대하여 점검 및 지도・관리・감독하고 그 결과에 대해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장

ㅇ 당사 또는 당사가 지정하는 자가 가맹점의 위생, 재고관리, 회계처리, 각종설비관리, 원·부자재관리 등이나 기타 점포의 유지 관리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영업시간 중에 가맹점에 출입할 수 있습니다.

3. 계약 종료 후의 부담

- 1) 가맹본부의 사정에 의해 계약종료 시 조치사항
- 가) 가맹본부가 가맹사업을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기존 가맹점사업자와의 계약승계 여부
- o 당사가 가맹사업을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가맹점사업자는 가맹계약을 종료하고 계약관계를 탈퇴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가맹점사업자가 양수한 사업자(가맹본부)와의 계약 관계 유지를 원할 경우에는 가맹계약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가맹관계를 탈퇴할 경우, 당사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지에 해당되므로 가맹점사업자는 남은 가맹계약기간을 고려하여 일부 가맹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나) 가맹본부가 사용을 허락한 지식재산권의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조치사항
- o 당사가 가맹점운영을 위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사용을 허가한 상표권, 특허권 등 지식재산권이 존속기간의 만료, 소유권(사용권) 변경, 효력 상실 등의 사유로 더 이상 지식재산권을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당사의 책임과 비용으로 이를 대체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하며, 이로 인해 가맹점사업자에게 손해가 발생하면 가맹점사업자와 협의하여 이를 배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대체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하지 못하거나 대체수단이 만족스럽지 못할 경우에는 가맹점사업자는 체결한 가맹계약을 해지하실 수 있으며, 이 경우 귀책사유 등을 감안하여 일부 가맹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다) 가맹본부가 해당 가맹사업을 중단하는 경우 조치사항
- o 당사는 원칙적으로 모든 가맹계약이 종료될 때까지 가맹사업을 중단하지 않습니다. 다만, 예상치 못한 사정으로 당사가 가맹사업을 중단하게 될 경우에는 이를 미리 가맹점사업자에게 통지하고 협의하 여 계약을 해지할 것입니다. 이 경우 계약해지의 귀책사유를 고려하여 일부 가맹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2) 가맹점 운영권 양도 과정의 부담
- o 귀하가 운영하는 해피케어 운영권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경우에는 귀하가 당사에 지급해야 할 비용은 없습니다. 다만, 당사로부터 사전승인 받은 양수인은 신규 가맹계약 기준의 가맹비, 교육비를 납입하여야 하며 가맹점을 운영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귀하는 원활한 양도양수를 위하여 양수인에게 회사의 제도, 규약, 금전적 지급의무 등을 설명하는 등 최대한 협조해야 합니다.

- 3) 계약 종료 후의 조치 사항
- o 가맹계약 기간의 만료 또는 계약해지에 의해 계약이 종료된 경우 귀하는 즉시 당사의 영업표지 등의 지식재산권의 사용을 중단하고 이를 철거하며(홈페이지나 블로그, 지역정보 등 인터넷상의 사용도 포함), 당사로부터 교부 받은 일체의 자료도 반환하여야 합니다. 이의 철거ㆍ원상복구의 비용은 귀하가 부담합니다. 다만, 당사의 귀책사유로 계약이 종료된 경우에는 당사가 부담합니다. 이상의 내용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가맹점사업자는 일정한 금액을 손해배상액으로 당사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 ㅇ 위 의무이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비용은 계약종료에 책임 있는 당사자가 부담합니다.

또한, 가맹점사업자가 당사 또는 당사가 지정한 자로부터 공급받은 물품을 반품하고자 하는 경우, 물품의 재고량, 오.훼손 등 관리상태, 유통기한 등을 고려하고 일정범위 내(10%~90%)에서 반품이 가능하며, 구체적인 내용은 당사와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V. 영업활동에 대한 조건 및 제한

o 귀하는 당사와 가맹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사업의 동일성 유지**를 위하여 **영업활동에 일부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기재된 내용을 신중히 살펴본 후 계약 체결 여부를 판단할 것을 권장합니다.

1. 물품 구입 및 임차

1) 귀하가 해피헬퍼를 시작하거나 경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부동산·용역·설비·상품·원재료 또는 부재료 등의 구입 또는 임차와 관련하여, 당사 또는 당사가 지정하는 자와 거래하는 품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물품 구입 및 임차 현황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장

- o 귀하가 위 표의 거래형태에 강제로 기재된 물품을 지정된 사업자가 아닌 자에게 공급받으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가맹본부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 o 당사는 경영환경의 변화 등으로 필요한 경우 위 표에 기재된 상품·용역 외에 다른 품목도 추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가맹점사업자의 동의를 미리 얻도록 하고 있으며, 동의가 없는 경우에는 본 정보 공개서의 내용에 따라 사업을 진행합니다.
- 나) 주요 품목별 직전 사업연도 공급가격의 상・하한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장

- 2) 특수관계인의 경제적 이익
- o 귀하가 해피헬퍼를 시작하거나 경영하기 위하여 당사가 거래할 것을 강제하는 부동산·용역·설비·상품·원재료 또는 부재료 등의 구입 또는 임차와 관련하여, 당사의 특수관계인은 경제적 이익을 수취하고 있지 않습니다.

2. 거래 강제 또는 권장의 대가 내역

1) 당사는 해피헬퍼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상품 또는 용역을 특정한 거래상대방에게 거래하도록 강

제 또는 권장하는 대가로 특정한 거래상대방으로부터 경제적 이익을 수취하고 있지 않습니다.

2) 당사가 해피헬퍼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상품 또는 용역을 특정한 거래상대방에게 거래하도록 강제하는 대가로 당사의 특수관계인은 특정한 거래상대방으로부터 경제적 이익을 수취하고 있지 않습니다.

3. 상품 • 용역, 거래상대방, 가격 결정

- 1) 가맹점사업자가 취급하는 상품・용역의 판매 제한
- 당사의 상표권을 보호하고 상품 또는 용역의 동일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귀하는 지정된 상품・용역 만을 판매하여야 하며 그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상품 • 용역명	제한내용 및 조건	위반 시 책임	비고
영유아베이비시터, 가사겸베이비시터, 가사도우미	왼쪽에 기재된 이외의 제품을 판매할 수 없음	1회 위반: 서면 시정요구 2회 위반 : 서면 시정요구 3회 이상 위반 : 계약 해지	문의 : 당사 (02-2237-3579)

- ㅇ 귀하가 위 표에 기재되지 않은 상품·용역을 판매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가맹본부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 o 당사는 경영환경의 변화 등으로 필요한 경우 위 표에 기재된 상품·용역 외에도 판매 제한을 가할수 있습니다. 이 경우 당사는 가맹점사업자의 동의를 미리 얻고 있으며, 동의가 없는 경우에는 본 정보공개서의 내용에 따라 사업을 진행합니다.
 - 2) 거래상대방(고객)에 따른 상품ㆍ용역의 판매 제한
- o 당사의 상표권을 보호하고 상품 또는 용역의 동일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귀하는 지정된 고객에 대해 상품·용역을 판매하지 않아야 하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거래상대방	상품 • 용역명	제한내용 및 조건	위반 시 책임
경쟁업체	당사 또는 당사의 지정업체로부터	거래상대방별로 당사 또는 당사의	1회 위반: 서면 시정요구
다른 가맹점사업자	공급받은 서비스, 상품 및 제품	지정업체로부터 공급받은 서비스, 상품 및 제품은 판매할 수 없음	2회 위반 : 서면 시정요구 3회 이상 위반 : 계약 해지

- o 귀하가 위 표에 기재된 거래상대방에게 제한된 상품·용역을 판매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가맹본 부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 o 당사는 경영환경의 변화 등으로 필요한 경우 위 표에 기재된 거래상대방(고객) 외에도 판매 제한을 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당사는 가맹점사업자의 동의를 미리 얻고 있습니다.
 - 3) 가맹점사업자의 가격 결정의 제한
- o 당사는 귀하가 판매하는 상품이나 용역의 가격을 정하여 이를 따르도록 권장하도록 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상	품ㆍ용역명	권장가격(단위: 원)	가격 통보 방법	비고
영유	아베이비시터	2,450,000	호페이지 ㄸㄴ 고ㅁ	출퇴근 4주(20일)
가사	겸베이비시터	2,850,000	홈페이지 또는 공문	2023.12월 기준

o 귀하가 위 표에 기재된 권장가격과 다른 가격으로 상품·용역을 판매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서면으로 당사와 혐의하여야 합니다.

4.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보호

- 1) 독점적 · 배타적 영업지역 설정
- o 당사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4에 의거 가맹계약 체결 시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을 설정하여 가맹계약서에 영업지역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 o 당사 및 당사의 계열회사는 가맹계약기간 중에는 정당한 사유없이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내에 동일한 업종의 직영점·가맹점을 추가 개설하지 않습니다. 동일한 업종의 범위 및 동일한 업종에 해당하는 당사 및 당사의 계열회사의 영업표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동일한 업종 범위	동일한 업종 영업표지	
승물인 집중 급기	가맹본부	계열회사
베이비시터, 가사도우미를 전문으로 하는 가맹사업	해피헬퍼	-

- 2) 영업지역 설정기준
- ㅇ 당사는 영업지역을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설정 기준	설정방법
서울/경기/인천/기타 광역시 경우 인구 50만명 ~ 100만명 당 1개 가맹사업자	기대계야니 병기에 얼어지어 ㅠ시/기드 ㅠ시/
기타 지방 시/도의 경우 인구 50만명 이하 기준 1개 가맹사업자	가맹계약서 별지에 영업지역 표시(지도 표시)

- 3) 가맹계약 갱신과정에서 영업지역을 재조정할 수 있는 사유 및 절차
- o 당사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4에 의거 가맹계약 갱신시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 한해서 가맹점사업자와 합의를 통하여 기존 영업지역을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영업지역 재조정 사유	재조정 절차	동의를 얻는 방법
 재건축, 재개발, 신도시 건설 등 대규모 개발로 인하여 상권의 급격한 변동이 발생하는 경우 해당 상권의 거주인구 또는 유동인구가 현저히 변동되는 경우 소비자의 기호변화 등으로 인하여 해당 상품·용역에 대한 수요가현저히 변동되는 경우 위의 사유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영업지역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인정되는 경우 	재조정 사유 발생 → 당사 담당팀 검 토 → 영업지역 변경(안) 작성 → 가맥전사업자에게 서면 통지 →	영업지역 변경(안)을 서면으로 통 지하고 30일 이내에 동의 여부 회신, 동의가 있는 경우 15일 이내에 영 업지역 재조정 완료 (신규 점포 입점 가능)

- 4) 영업지역 밖의 고객에게 상품이나 용역을 판매하는 데에 따르는 제한
- o 귀하는 가맹본부와 약정한 영업지역을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영업지역을 벗어나 다른 가맹점사업 자의 영역지역에 속한 고객에게 영업활동을 하는 경우 가맹본부는 다음의 조치를 취하여 가맹점사업자 상호간의 이해관계를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첫째, 가맹점사업자가 다른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의 고객과 거래하는 경우 가맹본부가 두 가맹점사업자 간의 보상금 지불에 대한 중재안을 제시하는 행위

둘째, 영업지역을 침해받은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조정 요구가 있는 경우 매출액 현황 조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행위

셋째, 특정 가맹점사업자가 다른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을 반복적으로 침해하여 해피헬퍼 영업 표지 이미지에 심각한 손해를 가한 경우 그 가맹점사업자에게 행위의 시정을 요구하고 손해배상액을 청 구하는 행위

- 5) 가맹점사업자가 취급하는 상품이나 용역 등이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내의 대리점 등 다른 유통 채널을 통해 공급되는지 여부
- 당사는 해피헬퍼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내에서 대리점, 다른 영업표지를 사용한 가맹점 등을 통해 가맹점사업자가 판매하는 상품이나 용역과 대체재 관계에 놓일 수 있는 동일·유사한 상품이나 용역을 공급하지 않습니다.
- 6) 가맹점사업자가 취급하는 상품이나 용역 등이 온라인, 홈쇼핑, 전화권유판매 등 다른 유통채널을 통해 공급되는지 여부
- o 당사는 온라인, 홈쇼핑, 전화권유판매 등을 통해 가맹점사업자가 판매하는 상품이나 용역과 대체재 관계에 놓일 수 있는 동일·유사한 상품이나 용역을 공급하지 않습니다.
 - 7) 그 밖에 영업지역에 관한 내용 : 해당없음

5. 가맹본부의 온라인·오프라인 판매에 관한 사항

1)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연간 국내 매출액 중 온라인과 오프라인 매출액 비중

연도	국내 온라인·오프라인 판매 매출액 비중			
	오프라인 판매 매출액 비중		온라인 판매 매출액 비중	
	가맹점	기타 오프라인	자사 온라인몰	기타 온라인
2023	4.5%	95.5%	-	-

2)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국내 판매상품 중 온라인과 오프라인 전용 판매상품의 비중

연도	오프라인 전용상품 비중	온라인 전용상품 비중
2023	-	-

6. 계약기간, 계약의 갱신·연장·종료·해지·수정

- 1) 가맹계약 및 갱신 기간
- o 해피헬퍼 가맹사업의 계약기간은 계약체결일로부터 1년이며, 가맹계약 갱신 시 계약기간은 계약갱신일로부터 1년입니다.
 - 2) 계약 연장이나 재계약, 또는 계약 종료에 필요한 절차
- o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귀하에게는 가맹계약의 갱신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최초 계약일로부터 10년간 주어집니다. 구체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순 서	기간(계약만료일: D-day)
① 가맹점사업자가 계약갱신을 요구하였습니까? 예→②, 아니오→⑦	D-180 ~ D-90
② 3)에서 정한 계약갱신 거절 사유에 해당합니까? 예→④, 아니오→③	D-180 ~ D-90
③ 가맹본부가 계약조건 변경을 서면으로 통지하였습니까? 예→⑤, 아니오→A	D-180 ~ D-90
④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거절 사유를 적은 서면으로 거절 통지를 하였습니까? 예→B, 아니오→A	①+15일 이내
⑤ 가맹점사업자가 계약조건 변경에 동의하였습니까? 예→C, 아니오→⑥	
⑥ 변경된 계약조건이 다른 가맹점사업자에게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계약조건입 니까? 예→B, 아니오→D	
⑦ 가맹본부가 계약갱신을 하지 않겠다는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였습니까?예→B, 아니오→®	D-180 ~ D-90
® 가맹점사업자가 계약갱신 또는 계약조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였습니까? 예→E, 아니오→A	D-60일 이전
A. 종전과 같은 조건으로 다시 가맹계약 체결	D-day
B.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날 계약 종료	D-day
C. 변경된 조건으로 다시 가맹계약 체결	D-day
D. 양자가 합의하여 계약조건을 바꾸어야 함(가맹본부가 계약 변경을 강행할 경우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할 수 있음)	-
E. 양자가 합의하여 계약을 만료하거나 변경된 조건으로 다시 가맹계약 체결(민 사상 문제로 가맹사업법에서 특별하게 제한하는 규정 없음)	-

- 3) 계약 갱신 거절(종료) 사유
- ㅇ 당사가 가맹계약의 갱신요구를 거절할 수 있는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갱신요구 거절 사유	관련 계약조문
0	가맹계약상의 가맹금 등의 금전지급의무를 지키지 아니한 경우	34조 2항
0	다른 가맹점사업자에게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계약조건이나 영업방침을 귀하가 수락하지 아니한 경우	34조 2항
0	가맹점 운영에 필요한 점포・설비의 확보나 법령상 필요한 자격・면허・허가의 취득을 하지 못한 경우	34조 2항
0	판매하는 상품이나 용역의 품질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조공법 또는 서비스 기법을 지키지 않은 경우	34조 2항
0	가맹사업 경영에 필수적인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방침을 지키지 않은 경우	34조 2항
0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교육·훈련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다만, 교육·훈련비용이 같은 업종의 다른 가맹본부가 통상적으로 요구하는 비용보다 뚜렷하게 높은 경우 는 제외합니다)	34조 2항

4) 계약 해지 사유 및 그 절차

ㅇ 당사가 귀하와의 가맹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계약 해지 사유	관련 계약조문
ㅇ 가맹계약상의 금전지급의무를 지키지 아니한 경우	35조 1항
ㅇ 가맹계약서 제4조 가맹점의 표시 규정을 위반한 경우	35조 1항
o 가맹계약서 제11조 영업지역 규정을 위반한 경우	35조 1항
ㅇ 가맹계약서 제14조 인테리어 및 설비 등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경우	35조 1항
o 가맹계약서 제15조 교육·훈련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35조 1항
ㅇ 가맹계약서 제18조 영업의 표준화와 판매가격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35조 1항
ㅇ 가맹계약서 제19조 영업일 규정을 위반한 경우	35조 1항
ㅇ 가맹계약서 제20조 복장규정을 위반한 경우	35조 1항
ㅇ 가맹계약서 제21조 물품 등의 주문 및 관리 규정을 위반한 경우	35조 1항
ㅇ 가맹계약서 제26조 광고 및 판촉 규정을 위반한 경우	35조 1항
o 가맹계약서 제27조 보고의무 규정을 위반한 경우	35조 1항
o 가맹계약서 제28조 영업비밀유지의무 규정을 위반한 경우	35조 1항
ㅇ 가맹계약서 제29조 경업금지의무 규정을 위반한 경우	35조 1항
ㅇ 가맹계약서 제30조 감독 및 시정요구 규정을 위반한 경우	35조 1항
ㅇ 가맹계약서 제32조 영업의 양도 규정을 위반한 경우	35조 1항

o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당사는 가맹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에는 귀하에게 서면으로 2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고 계약의 위반 사실 및 이를 시정하지 않을 경우 계약을 해지한다는 사실을 2회 이상 통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계약해지는 무효가 됩니다.

o 다만, 가맹사업법 시행령 제15조의 계약해지 사유에 해당되는 아래의 경우에는 2개월 이상의 유예 기간이나 2회 이상의 서면통지 없이 계약서에 따른 절차를 거쳐 계약이 해지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즉시 계약 해지 사유	관련 계약조문
o 가맹점사업자에게 파산 신청이 있거나 강제집행절차 또는 회생절차가 개시된 경우	35조 2항
o 가맹점사업자가 발행한 어음·수표가 부도 등으로 지불 정지된 경우	35조 2항
o 천재지변, 중대한 일신상의 사유 등으로 가맹점사업자가 더 이상 가맹사업을 경 영할 수 없게 된 경우	35조 2항
o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 운영과 관련되는 법령을 위반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정처분을 받거나 법원 판결을 받음으로써 가맹본부의 명성이나신용을 뚜렷이 훼손하여 가맹사업에 중대한 장애를 초래한 경우가. 위법사실을 시정하라는 내용의 행정처분나. 위법사실을 처분사유로 하는 과징금·과태료 등 부과처분다. 위법사실을 처분사유로 하는 영업정지 명령	35조 2항
o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 운영과 관련되는 법령을 위반하여 자격·면허·허가 취소 또는 영업정지 명령(15일 이내의 영업정지 명령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등 그 시정 이 불가능한 성격의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다만, 법령에 근거하여 행정처분을 갈음하는 과징금 등의 부과 처분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35조 2항
o 가맹점사업자가 법 제14조제1항 본문에 따른 가맹본부의 시정요구에 따라 위반사항을 시정한 날부터 1년(계약갱신이나 재계약된 경우에는 종전 계약기간에 속한기간을 합산한다) 이내에 다시 같은 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다만, 가맹본부가 시정을 요구하는 서면에 다시 같은 사항을 1년 이내에 위반하는 경우에는 법 제14조제1항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가맹계약이 해지될 수 있다는 사실을 누락한경우는 제외한다.	35조 2항
o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 운영과 관련된 행위로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	35조 2항
o 가맹점사업자가 뚜렷이 공중의 건강이나 안전에 급박한 위해를 일으킬 염려가 있는 방법이나 형태로 가맹점을 운영하고 있으나, 행정청의 시정조치를 기다리기 어려운 경우	35조 2항
o 가맹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연속하여 7일 이상 영업을 중단한 경우	35조 2항

- 5) 계약 수정의 사유, 사전 통보 여부 및 동의 절차
- o 당사는 계약기간 중에 계약서의 내용을 변경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귀하의 동의를 얻어 계약 조건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

계약 수정 사유	관련 계약조문
o 영업지역의 급격한 환경변화(재건축,재개발,신도시건설 등)로 상권의 급격한 변동 (인구, 소비자 기호변화 등)이 발생한 경우	35조 4항
ㅇ 당사가 영위하는 베이비시터(가사도우미) 서비스 분야의 급격한 정부정책 변화 등으로 상권의 급격한 변동이 발생한 경우	35조 4항
o 기타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가 공통으로 인정하는 상당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35조 4항

재조정 절차	동의 절차
계약 수정 사유 발생 → 당사 담당팀 검토 → 수정계약서(안) 작성 → 가맹점사업자에게 서면	수정 계약서(안)를 서면으로 통지하고 30일 이내에 동의 여부 회신, 동의가 있는 경우
통지 → 가맹점사업자 동의 → 수정 완료	수정계약서에 정한 날부터 효력 발생

o 당사는 가맹점사업자가 변경된 계약 내용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을 경우 기존 계약내용을 그대로 유지합니다.

7. 가맹점운영권의 환매・양도・상속 및 대리행사

- 1) 가맹점운영권의 환매
- o 당사는 가맹점운영권의 환매와 관련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 2) 가맹점운영권의 양도
- o 귀하가 가맹점운영권을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당사에 서면으로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하고, 당사의 승인이 있어야만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양도 가능 조건	양도 절차	비고
양수인이 당사가 정한 가맹점 운영 기준을 준수할 것	가맹점사업자가 서면으로 양도 신청 → 당사 담당팀 검토 (양수인 면담 포함, 30일 가량 소요) → 승인 여부 통지 → 양도인, 양수인, 가맹본부의 양수.양도 계약 체결(10일 소요) → 양수인은 가맹본부와의 가맹계약체결 → 가맹점운영권 이전 완료	문의: 당사

- o 당사가 양도를 승인하면 양수인은 양도인의 모든 권리의무를 승계하게 되며 양수인은 신규 가맹계약 기준의 가맹비, 교육비를 납입하여야 합니다.
- o 양도인은 가맹점운영권의 양도신청과 함께 가맹점의 집기, 설비, 시설물, 인테리어 등의 점검을 의뢰하고 교체·보수가 필요한 부분은 교체·보수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 3) 가맹점운영권의 상속, 대리행사, 위탁 등
- o 가맹점운영권은 원칙적으로 당사와 가맹계약을 체결한 귀하에게 주어집니다. 따라서 가맹점운영권을 대리로 행사하거나 업무를 위탁할 수 없으며 만약, 부득이한 사정이 발생할 경우 가맹본부에 이 사실을 알리고 협의하여야 합니다.
- o 가맹점사업자의 상속인은 가맹점 영업을 상속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상속개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사실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다만, 상속인이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에 해당하거나 이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맹계약은 종료합니다.

구분	가능 여부(조건)	이전 범위	절차	기타 의무사항
상속	가능 (상속인 사후 통지시)	모든 권리의무	양도절차와 동일	교육수료 및 교육비 납입
대리행사	불가 (본부 승인시 가능)			
업무위탁	불가 (본부 승인시 가능)			

8. 경업금지, 영업시간 제한, 가맹본부의 영업장 관리 · 감독

1) 경업금지의 범위

o 당사는 계약기간 동안 귀하가 해피헬퍼와 동일한 업종의 영업을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만약 귀하가 그러한 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가맹본부에 서면으로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이를 위반하여 당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귀하는 민.형사상의 책임을 집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경업금지 되는 업종	경업허가 절차	비고
베이비시터 가사도우미	가맹점사업자가 서면으로 경업허가 신청 → 당사 담 당팀 검토(시장조사 포함, 30일 가량 소요) → 허가 여 부 통지 → 완료	

o 귀하는 가맹계약 해지 및 종료시 2년 이내에 동일지역(동일상권) 내에서 본인 또는 직계가족 명의로 동종 또는 유사한 업종의 영업을 할 수 없습니다.

2) 영업시간 및 영업일수 제한

ㅇ 당사는 해피헬퍼의 영업시간 및 영업일수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영업시간	영업일수	비고
09:00~18:00	제한하지 않음	문의: 당사(02-2237-3579)

- o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제10호에 따라 귀하가 정당한 사유 없이 연속 하여 7일 이상 영업을 중단한 경우 가맹계약 해지가 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o 귀하는 무단으로 휴업할 수 없으나, 부득이한 사정이 있어 당사와 사전 협의한 경우는 예외로 합니다.
- o 귀하가 부득이 휴업하고자 하는 경우 그 사유를 기재하여 서면으로 당사에게 휴업개시 희망일 7일 전까지 신청하여야 합니다.
 - 3) 권장 종업원 수 및 영업장 근무 여부

- ㅇ 당사는 귀하가 운영하는 가맹사업장의 종업원 및 근무 형태를 제한하고 있지 않습니다.
- 4) 가맹본부의 영업장 관리·감독
- o 당사는 당사 또는 가맹점사업자의 필요시 비정기적으로 관리·감독할 수 있습니다.
- ㅇ 점검내용에 대해서는 시정사항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별도로 공지됩니다.

9. 광고 및 판촉 활동

- 1)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의 비용 분담 기준
- ㅇ 당사는 해피헬퍼 영업표지 이미지 제고 및 매출액 증대를 위한 광고 및 판촉 활동을 위해 필요한 비용을 가맹점사업자와 나누어 부담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광고 성격	부담비율		분담 절차	비고
下正	<u> </u>	본사	가맹점	군급 골시	₽1 <u>17.</u>
	브랜드, 상품광고 (전국단위)	광고비 10%	광고비 90%	개취 고급 그 라마지의 취임	
광고	브랜드, 상품광고 +가맹점모집광고 (전국 및 지점)	광고비 10%	광고비 90%	계획 공고 → 가맹점의 참여 여부 결정 → 가맹점부담액 대중매처 제시(명세서)	
	가맹점 모집광고	광고비 100%	-		
	팜플렛 인쇄 및 판촉물 구매	-	광고비 100%	가맹점사업자(지점) 영업권역 內	
지점 판촉 행사	영업지역 내 다양한 홍보매체 (키워드,지도,맘카페, 블로그,산모교실,지 역신문, 산부인과 등) 광고	-	광고비 100%	집행이므로 지점 전액 부담. 또한, 지점수익은 본인 수익과 직결되므로 본사에만 의지하지 않고, 다양한 (지역)매체 중 일부를 선정하여 매달 진행	본사는 컨텐츠 기획 및 디자인 기획 지원 * 인쇄비, 광고비는 가맹사업자 부담

- o 전국단위 광고의 가맹점부담액은 통계청 자료(지역별 출생아수 및 비율)를 기준으로 가맹사업자별 가맹점부담액을 산정하고 분담합니다. 가맹사업자의 영업권역 내 지역광고인 경우에는 가맹점사업자가 부담합니다.
- o 전국단위 광고의 경우 컨텐츠 기획 및 디자인 기획은 당사가 부담하고, 광고비의 가맹점부담액은 통계청 자료(지역별 출생아수 및 비율)를 기준으로 가맹사업자별 가맹점부담액을 산정하고 분담합니다.
- o 당사는 가맹점사업자가 비용의 일부라도 부담하는 광고 및 판촉활동을 하는 경우 가맹점사업자에게 집행내역을 사전 통보하고, 가맹점사업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는 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합니다.

- 2) 가맹점사업자의 독자적 광고・판촉 활동
- o 가맹본부가 전체적으로 진행하는 다양한 홍보채널 운영, 홍보 진행에만 의지하지 않고, 스스로 또는 다른 가맹점사업자와 함께 지역 내 광고・판촉 활동을 매월 진행해야 합니다.(위의 표 참조)
- o 이때 가맹본부에 타당성 검토(매체 효용도, 비용 효율성 등)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가맹사업자는 광고·판촉비용 중복 여부, 광고 활동의 적정성 및 비용 효율성, 브랜드 정체성 유지 등을 위해 광고판촉활동 전에 가맹본부에 내용을 사전 협의하고 시행하여야 합니다.

10.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사항

- o 당사의 영업비밀이란,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가맹본부의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말합니다.
- o 귀하는 계약체결 및 가맹점 운영상 알게 된 가맹본부의 영업비밀(경영노하우, 영업규정, 기타 이에 준하는 영업비밀)을 계약기간은 물론 계약종료 후에도 제3자에게 누설해서는 안 됩니다. 가맹본부의 허락 없이 교육과 세미나 자료, 기타 가맹점 운영과 관련하여 영업비밀(경영노하우, 영업규정, 기타 이에 준하는 영업비밀)이 담긴 관계서류의 내용을 인쇄 또는 복사할 수 없으며 제3자에게 대여하거나 공개할 수 없습니다.
- o 당사의 영업비밀을 무단으로 유출할 경우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1. 가맹계약 위반 시 손해배상에 관한 사항

o 이 계약의 당사자는 상대방의 계약위반이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서 위약금을 청구하거나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가맹계약서 제31조 손해배상

- ① 을이 제21조(물품 등의 주문 및 관리), 제28조(영업비밀유지의무), 제36조(계약의 종료와 그 조치)의 규정을 위반할 경우 을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제14조 2 손해액의 추정 등'에 의거 규정한 손해액을 배상하여야 하고, 발생되는 손해의 비용은 법무비용을 포함하여 갑이 을에게 손해의 배상을 청구한다.
- ② 본 계약이 제35조(계약의 해지 및 수정)에서 규정하고 있는 일방의 귀책사유로 인해 해지되는 경우 계약을 해지한 당사자는 귀책사유가 있는 상대방에게 그 의무 위반으로 인해 입은 손해배 상을 청구할 수 있다.
- ③ 갑은 을과의 가맹계약이 기간만료, 해지, 가맹점운영권 양도 등으로 종료될 경우 갑에 대한 을의 채무액 또는 손해액을 배상하여야 한다.
- ④ 을 또는 을의 직원 등의 귀책사유로 갑 또는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을은 지체 없이 갑에게 통지하고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 ⑤ 갑과 을은 본 계약의 이행이 천재지변, 전쟁, 내란, 정부의 규제, 노동쟁의 발생 등의 사유에 의해서 불가능하게 되거나 지연된 경우에는 손해배상 책임을 지지 않는다. 단, 당사자는 계약의 이행 불능이나 지연에 의해 발생하는 손해를 조금이라도 경감시킬 수 있도록 노력한다.
- ⑥ 제36조(계약의 종료와 그 조치) 제1항에 규정된 영업표지 등의 철거의무를 지체하는 경우 지연 보상금(지체 일수 × 100,000원)을 갑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 ⑦ 이 계약의 당사자는 상대방의 계약위반이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본 계약상 구제수단 외에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 ⑧ 을은 가맹본부 또는 그 소속 임원의 위법행위 또는 가맹사업의 명성이나 신용을 훼손하는 등 사회 상규에 반하는 행위로 인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가맹본부에게 본 계약 상 구제수단 외에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VI. 가맹사업의 영업 개시에 관한 상세한 절차와 소요기간

1. 상담 • 협의 과정에서부터 가맹점 영업 시작까지 필요한 절차 요약

o 귀하가 당사와 가맹계약을 체결할 경우 상담일로부터 실제 가맹점이 개설될 때까지 걸리는 시간과 필요한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포함)

구분	내용	소요기간	소요비용
합계		45일 내외	
가맹희망자 문의	- 전화문의 접수 - 희망지역 확인, 담당자 배정	D-45	
사업 설명·상담	- 정보공개서 및 가맹계약서 제공 - 인근 10개 가맹점 현황문서 제공 - 가맹희망자 상담	D-44	IV. 가맹점사업자의 부담
점포개발 및 상권분석 실시	- 입지선정 - 입지 주위 점포 정보 제공	필요시 실시	V. 영업활동에 대한 조건 및 제한
최종 협의	- 개설 승인	D-29	, "L
가맹계약 체결	- 계약 체결	D-28	40 07 1741171
가맹금 예치	- 가맹금 예치 또는 -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체결	D-27	12p ~ 27p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점포실측/설계	- 투자비 산출	D-26~24(3일)	
실내외 공사착수	- 도면협의 및 공사일정 확인	D-23(1일)	
인테리어 공사	- 공사 실시	D-23~5(19일)	
교육 실시	- 점포운영교육 실시	D-15~2(14일)	
점포 개설	- 가맹점 개설 및 영업시작	D-day	

- o 위 표에 따른 소요기간은 평균적인 가맹점을 기준으로 작성된 것으로, 협의 과정에서 시장상황 등에 따라 그 기간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 o 귀하는 본사와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변호사나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문이 필요하신 경우는 본사에 소속되어 있거나 업무 연관성이 있는 변호사나 가맹거래사를 제외하고 귀하께서 선택하신 변호사나 가맹거래사에게 정보공개서 및 가맹계약서 등에 대하여 자문을 받으시기 바라며, 특히 정보공개서에 대하여 자문을 받으신 경우에는 계약체결일이 정보공개서 제공 14일 후에서 7일후로 단축됩니다.

2. 가맹본부와의 분쟁 해결 절차

- o 가맹계약 당사자는 계약의 해석 또는 계약에 의해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 다툼이 있을 경우 법적 절차에 이르기 전까지 우선적으로 대화와 협상을 통해 분쟁을 해결하도록 합니다.
- o 대화와 협상으로 분쟁이 해결되지 아니할 경우,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라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의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연락처: 1588-1490, 홈페이지: http://www.kofair.or.kr) 또는 시·도의 분쟁조정협의회에 조정을 신청하거나 다른 법령에 의해 설치된 중재기관에 중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o 중재를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법적 분쟁에 관한 소송은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기합니다. 단,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가 관할법원에 대해 약정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VII. 가맹본부의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

1. 점포환경개선 시 비용지원 내역

- ㅇ 당사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 o 당사의 사업 내용은 고객 가정에 베이비시터(가사도우미)를 파견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주된 서비스 제공 장소는 점포가 아닌, 고객의 가정에서 이루어집니다. 가맹점사업자의 소규모 사무실(10명 이하)은 고객이 내방하는 점포 성격이 아닌 고객 전화상담, 행정사무, 베이비시터 교육이 이루어지는 사무공간으로써의 역할을 하기에 별도의 인테리어 및 대규모 집기비품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 o 따라서, 점포환경개선 사유가 발생하지 않아 이로 인한 가맹본부의 비용 분담 등의 업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2. 판매촉진행사 시 인력지원 등 내역

ㅇ 당사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3. 경영활동 자문

o 당사는 가맹점사업자의 경영활성화를 위하여 가맹점사업자의 경영활동에 대한 경영지도를 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 분	대상 및 내용	절 차	비용부담	비고
가맹본부 요청 시	 상품에 따른 마케팅 방법 등 경영지도 해당 지역의 특성과 시장동향 분석에 따른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의 경영 활성화나 경영지도가 필요하다고 판단> 가맹점사업자의 사무실 을 방문하거나 유선상으로 관련 된 지도를 할 수 있음	가맹본부 부담	
가맹점 사업자 요청 시	개별 가맹점의 운영방안 지도 3. 가맹점 운영에 따른 제반 문제점 발생 시 그 해결을 위한 경영지도	가맹본부에 경영지도를 요청> 가맹본부는 경영지도를 위한 방 법 및 일정 안내> 가맹점사업 자 동의시 경영지도 진행	가맹점사업자 부담 (기맹금에 포함된 통상의 경영지도 비용을 초과한 부분에 한함)	문의: 당사 02-2237-3579

4. 신용 제공 등 내역

ㅇ 당사는 귀하에게 신용 제공 또는 알선을 하지 않습니다.

5. 안정적인 점포 운영을 위한 경영상 지원 내역

당사는 가맹점사업자의 안정적인 점포 운영을 돕기 위해 경영상 지원활동을 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또한, 아래 지원내용 이외에도 가맹점사업자의 경영사정 등을 감안하여 추가 지원이 있을 수 있습니다.

지원 정책	주요 내용(지원 내용)	지원 조건	지원 기간
온라인 홍보	가맹본부의 블로그, SNS 채널 대상으로 '고객 후기글' 또는 '유익정보' 등을 활용한 '컨텐츠 제작' 및 '홍보(노출)'	신규 및 기존 가맹계약 유지 중인 가맹점사업자	연간 1회 이상
홍보 컨텐츠 및 지사운영관리 체크 리스트 제작, 교육	가맹점사업자가 다양한 홍보활동 진행시 필요한 디자인(컨텐츠)을 제공 * 온라인 컨텐츠, 팜플렛, 현수막, X배너, 회사소개서, 운영관리 체크리스트 등	신규 및 기존 가맹계약 유지 중인 가맹점사업자	최초 1회 및 사안에 따른 비정기적 홍보 컨텐츠 제작/지원

단, 가맹점사업자가 제공하는 서비스의 고객 만족으로 창출되는 '이용 후기글(고객의 자발적 후기글 작성)' 이 없을 경우 위의 '온라인 홍보(가맹본부 블로그, SNS)'는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또한, 가맹점사업자가 별도로 홍보 대행사와의 계약을 통해 '고객 이용 후기글'을 홍보하는 경우에는

중복글(동일한 내용) 노출의 제약조건으로 인해 위의 온라인 홍보를 진행할 수 없습니다. * '중복글'은 해당 기업(네이버 등)의 자체 규정상 홍보글 노출 제한, 저품질 판정 등 기준이 적용되기 때문

WⅢ. 교육·훈련에 대한 설명

1. 교육・훈련의 주요내용

ㅇ 당사는 해피헬퍼 운영에 필요한 제반 지식 및 노하우를 귀하에게 전수하기 위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장

2. 교육・훈련의 최소시간 및 비용

o 귀하가 해피헬퍼 가맹사업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교육·훈련의 최소시간 및 비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포함)

구분	최소시간	비용(단위:천원, 부가세포함)	비고
신규 교육	2주 (1일 9시간)	5,500 (최초 가맹금에 포함)	최초 계약 시 이수
보수 교육	1일 (9시간)	실비	매년 필수적으로 이수 (교육내용에 따라 비용 상이)

3. 교육・훈련의 주체

o 교육·훈련은 가맹계약을 맺는 당사자가 직접 받아야 합니다. 다만, 귀하가 직접 받기 어려운 경우에는 본사의 사전 승인을 받아 가맹점을 함께 운영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대신하게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가맹계약 당사자가 원하여 당사자 외 직원도 같이 교육을 받게 되면 인원 추가에 따라 비용도 추가됩니다.

4. 교육・훈련 불참 시에 받을 수 있는 불이익

- o 기한 내 신규 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가맹계약서 15조에 따라 1개월 내로 교육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가맹계약이 해지(가맹계약서 35조)될 수 있습니다.
- o 기한 내 보수 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가맹계약서 15조에 따라 1개월 내로 교육을 이수하여야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본사가 정한 기준에 따라 벌점을 부여받는 등 향후 재계약 거절 등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IX. 가맹본부의 직영점 운영 현황

1.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직영점의 명칭 및 소재지

ㅇ 가맹본부에서 1곳을 직접 운영하고 있습니다.

연번	지역	명칭	소재지
1	서울	본사	서울시 광진구 천호대로 596(능동)

2.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전체 직영점의 평균 운영 기간 및 운영 기준

o 가맹사업자와 동일한 상품, 서비스, 가격 체계를 동일하게 운영합니다.

2023년 직영점의 평균 운영 기간 (단위 : 년, 개월)	비고
5년 11개월	-

3.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전체 직영점의 연간 평균 매출액 산정기준

2023년 직영점의 연간 평균 매출액 (단위 : 천원, 부가세 미포함)	비고	
6,373	매출장 산출자료	

< 정보공개서 내용 문의 > -

- ◇ 이상의 정보공개서에 대하여 문의 사항이 있거나 정보공개서와 다른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당사(02-2237-3579)로 연락 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관련 내용이 궁금하신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 고객지원담당관실(044-200-4010) 또는 가맹거래과(help@ftc.go.kr)로 문의하십시오. 개별 정보공개서 내용에 관한 문의는 받지 않고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 이 정보공개서는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업정보제공시스템(http://franchise.ftc.go.kr)에서 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재무상태표 및 손익계산서>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장

(앞 쪽)

	처리기간						
	즉시						
신청인	상호(가맹점)명						
	성명(대표자)						
	주소(사무소)	(전화:)				
가맹 본부	상호명(영업표지)	(주)해피케어(해피헬퍼)					
	성명(대표자)	주동환					
	주소(사무소)	서울시 광진구 천호대로 596 (능동) 삼	진빌딩 2층				
예치가맹금		₩ (급	원 정)				
신청인의 계좌							
가맹본부의 계좌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6조의5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7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가맹금을 예치하여 줄 것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	명 또는 인)				
예기	지기관의 장	<u>-</u> 1					
	귀 [;] 지점장	र					

210mm×297mm(일반용지 60g/m²(재활용품))